【 6 】양주 ~ 녹양간 송전선로탑 건설위치 변경 건의안

제안년월일 : 1996. 8. 21.

제 안 자 : 김영안의원외 2인

□ 주 문

건의안을 채택 관련기관에 송부

□ 제안이유

양주 ~ 녹양간 송전탑 건설에 대하여 지역주민들이 전자파 피해의식과 북한산 국립공원 생태계 파괴등 생존권 문제로 결사 반대하는 의견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양주 - 녹양간 송전선로탑 건설위치 변경 건의문

□ 양주 - 녹양간 송전선로탑 건설은 국가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중요사업임은 의심의 여지가 없으나 본 지역 집단 거주 주민들의 전자파 피해의식과, 북한산국립공원의 훼손 등의 문제로 결사반대 하므로 이들의 의견을 종합해 볼 때 타당하다고 판단 10만 군민을 대표한 양주군의회 의원 전원은 지역주민의 의사대로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 노선변경이 될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하고 건의합니다.

1. 양주 - 녹양간 송전선로탑 건설 위치 변경 요구에 대하여는 전원개발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5항에 의거 1994년 7월 9일 양주군수가 경기도와 관계기관에 기이 의견을 제시한 내용과 같이 장흥면 주민이 요구하는 자연부락 장포동, 이안동과 북한산국립공원 지역인 송추유원지 외곽지역으로 변경 설치토록 하고

2. 본 지역은 각종 행위제한지역인 그린벨트지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국립공원지역과 T·V 난시청 지역 임을 감안하여 볼 때 이지역 주민들은 스스로 피해의식이 팽배해 갈 뿐만 아니라 제2의 생존권 박탈이라고 결사반대 하므로 송전탑 설치 변경을 전면 재검토 할 것을 건의합니다.

【 7 】군정질문에 따른 현장확인의 건

제안년월일 : 1996. 8. 23.

제 안 자 : 김광배의원외 2인

□ 제안이유

군정에 관한 질문과 관련하여 현황을 정확히 파악코자 함.

□ 주요골자

o 기간 : 1996. 8. 28(수) 1일

o 대상 : 2개소

· 주내 ~ 가납간 도로 확·포장 공사

· 덕도리 군유지